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36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 송언석 · 구자근 · 정희용

박충권 · 임이자 · 장동혁

임종득 • 권성동 • 이철규

서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후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만 허용되던 육아휴직이 임신 중인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현행법이 개정됨. 이는 유·사산 위험 등 특별한 모성보호 필요가 있는 임신 중인 여성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남성 배우자의 역할도 크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10일을 한도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가족의 돌봄으로 법으로 정한 휴 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린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 대처가 어 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신 중 육아휴직의 대상에 임신 중인 배우자의 근로자도 포

함하고, 특별한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는 최대 5일간 보장하며 이와함께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여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등).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을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30일의 휴가(이하 "아이맞이 아빠휴가"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배우자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90일이"를 "100일이"로, "청구할"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를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중"으로, "근로자가 만"을 "만"으로 한다.

제19조의6 중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한다.

제22조의2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호에도 불구하고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가족의 질병, 사고 또는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5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제2호의2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한다.

제39조제3항제3호 중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 도"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를 사용하려는 때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이맞이 아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아이맞이 아빠휴가의 기간은 30일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아이맞이 엄마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근로자는 부칙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이맞이 엄마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아이맞이 아빠휴가제"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제목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제77조제1항 후단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아이맞이 엄마휴가기간"으로,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해당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각각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각각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한다.

③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이하 "아이맞이 엄마휴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한다.

제93조제8호 중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혅 행 아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제18조(아이맞이 엄마휴가 등에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대한 지원) ①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 ----아이맞이 아빠휴가-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 맞이 엄마휴가-----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 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제18조의2(아이맞이 아빠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 출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30일의 휴가(이하 "아이맞이 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 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아빠휴가"라 한다)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 ③ 아이맞이 아빠휴가-----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 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일이-----사용할-----.

- ④ <u>배우자 출산휴가</u>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 다.
- ⑤ 사업주는 <u>배우자 출산휴가</u>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u>임</u> 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u>근로자가 만</u>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 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② ~ ⑥ (생 략)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u>출산</u>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

	④ <u>아이맞이 아빠휴가</u>	-
		-
	⑤ <u>아이맞이 아빠휴기</u>	<u>-</u>
		-
-3		
제	19조(육아휴직) ① <u>근</u>	_
	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	_
	<u>신 중만</u>	-
		_
		_
		_
		_
		_
		_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	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	
	주의 지원)	-
		-
		-
	<u>o</u> }o]	_
	<u>맞이 엄마휴가</u>	-
		-

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7 등을 위한 지원) ① ~ ③ (생략)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2. (생략)

<신 설>

- 3. (생략)
- ⑤ ~ ⑩ (생 략)

제37조(벌칙) ① (생 략)

-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2. (생략)

<u>.</u>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 ③ (현
행과 같음)
4
1. · 2. (현행과 같음)
<u>2</u> 의2. 제2호에도 불구하고 만 9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가족의 질병, 사고 또
는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3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 2. (현행과 같음)
2의2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3. ~ 9. (생략)
- ③ ④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의2. ~ 2. (생략)
-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u>배우자의 출산을 이</u> 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 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 9. (생략)

④・⑤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에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의2. ~ 2. (현행과 같음)
3
<u>아이맞이 아빠휴가</u>
를 사용하려는 때에
3의2. ~ 9. (현행과 같음)
④·⑤ (혀해과 같음)